

중국 기업범죄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모홍씨엔

I. 중국 기업범죄의 관련법규 및 현황

1. 중국 기업범죄의 관련법규

중국 대륙에서는 20세기 80년대 중반부터 기업범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시작이 비교적 늦은셈이다. 중국에서 1993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할 것을 제기하였고, 2001년 WTO에 가입한후 중국 기업의 형태 및 직면한 국내국제 환경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기업범죄 의미의 내포와 외연도 부단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현단계에서 형법학적 시점으로 볼 때 기업범죄란 기업이나 그 구성원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혹은 기업이 그 관리에 소홀한 탓으로 기업구성원이 법정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진행과정에서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칠뿐만 아니라 형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¹⁾

범죄학의 시각으로 볼때 기업범죄는 본질적으로 경제윤리(성실 · 신용과 공평 등), 환경윤리 등 윤리규칙을 위반한 행위이다. 기업범죄에 관한 형사입법에서 이 점을 구현하고 경제윤리, 환경윤리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은 기업범죄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본원칙이고, 이 원칙 뒤에 잠재한 윤리규칙은 명시적 법률규범의 객관적 요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²⁾.

중국에서 기업범죄는 정식적인 법률개념이 아니라 이론적인 개념일뿐이다. 실무

1) 卢林 : [기업범죄론: 중미기업범죄비교연구의 시각으로부터], 법률출판사 2010년, 29면.

2) 丁英华 : [기업범죄론], 중국검찰출판사 2011년, 28-29면 35면.

적으로 보면 대부분 기업범죄는 단위범죄(單位犯罪)와 경제범죄의 중첩부분의 일부이다.

중국 형법 제30조는 “회사, 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가 실시한 사회에 위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단위범죄로 규정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여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위범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회사, 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가 실시한,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행위이다.” 보다싶이 중국형법에서 기업범죄는 단위범죄에 포함된다. 기업범죄의 핵심은 그 범죄주체---“단위”이다. 중국 형법에서 단위(單位)는 외연이 넓은 법률개념으로서 회사, 기업, 국가기관, 사업단위(事業單位), 인민단체 등 이외에 심지어 일부 단위내부의 부서도 포함한다.

중국은 1987년에 반포한 <세관법>에서 처음으로 단위를 범죄주체로 인정했다. 1997년 형법전은 단위범죄를 규정하였으며 412개 죄명중 단위가 범죄주체로 될수 있는 죄명이 130개 었다. 2009년까지 형법전에 규정한 444개 죄명중 단위범죄가 144개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단위범죄의 분포상황을 보면 주로 제3장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 파괴죄”와 제6장 “사회관리질서 방해죄”에 집중되어 있다. 그 외 국가기관도 단위범죄의 주체가 될수 있는데 이는 아마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할 것이다.

중국에서 경제범죄라는 용어는 주로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 등 불법적인 경제이익취득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가리키며 때로는 탐오수뢰 등 직무범죄도 가리키나 이 글에서는 첫번째 의미로 해석한다.

중국에서 경제범죄의 죄명은 주로 제3장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 파괴죄”에 집중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짜, 불량상품 생산·판매죄, 밀수죄, 회사·기업에 대한 관리질서 방해죄, 금융관리질서 파괴죄, 금융사기죄, 세금징수관리 위해죄, 지적재산권 침해죄, 시장질서 교란죄 등 범죄유형을 포함한다. 이런 유형의 범죄들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 즉 주관적으로는 불법적인 경제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고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경제관리제도를 위반한 것이다. 제3장을 제외하고, 회사가 불법적인 경제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한 행위는 또 형법 각칙 제6장 “사회관리질서 방해죄”, 제2장 “공공안전 위해죄” 등 기타 범죄를

구성할수 있다. 예를들면 경찰용장비 불법생산·매매죄, 총기류 규정위반 제조, 판매죄 등이다.

기업범죄는 단위범죄에 포함되기에 단위범죄에 대한 처벌원칙은 마찬가지로 기업범죄에 적용된다. 중국 형법 제31조는 “단위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그 밖의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형벌에 처한다. 이 법의 각칙과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중국 형법은 단위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양벌제를 실시한다(31조 전단). 즉 단위를 처벌함과 동시에 책임자도 처벌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단위를 벌금형(罰金刑)에 처하고 책임자는 (기타)형벌에 처한다.

양벌제의 이론적 논거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복합주체론이다. 이는 단위는 형식일 뿐이고 자연인이야말로 내용이다. 둘째, 신복합주체론이다. 이는 단위구성원은 여전히 자체의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양자는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이중구조론, 이는 단위는 표층범죄이고 책임자는 심층범죄이다. 넷째, 경합론, 이는 책임자의 행위와 법인의 행위가 경합된다. 다섯째, 인격화된 계통책임론이다. 여섯째, 단위범죄관계론, 이는 단위는 독립성이 있고 단위구성원은 이중성(종속성과 독립성)이 있다. 일곱째, 계통모순론, 이는 사회라는 대계통과 단위라는 소계통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여덟째, 연대형사책임론이다.

이 중에서 비교적 유행하고 있는 것은 여섯번째 이론-단위범죄관계론이다. 31조 후단의 규정은 바로 단위범죄의 예외적 처벌원칙인 단벌제이다. 형법 각칙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형법중 단벌제란 책임자만 처벌하는 방식인데 대벌제(代罰制)라고도 한다. 단위범죄가 단위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거나 단위가 범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단벌제를 적용한다.

독자들이 중국 기업범죄에 대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할수 있도록 여기에서 <표1>를 통하여 중국 형법전중 회사가 범죄를 구성할수 있는 일부 죄명과 그 법정형을 열거하였다.

표1: 중국 형법중 일부 기업범죄의 죄명 및 법정형

번호	조문	죄명	단위에 대한 형벌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그 밖의 직접책임자에 대한 형벌	비고
01	126조	총기류 규정위반 제조, 판매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02	140조	가짜, 불량제품 생산, 판매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판매금액이 5만원이상 20만원 미만에 달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판매금액이 20만원이상 50만원 미만에 달하였을 경우 2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판매금액이 5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에 달하였을 경우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판매금액이 200만원이상에 달하였을 경우 15년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판매금액의 50%이상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03	153조	일반화물, 물품 밀수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그 밖의 직접책임자를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04	158조	등록자본 허위보고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단위에 대하여: 허위보고한 등록자본액의 1%이상 5%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한다.	
05	159조	허위출자, 출자추출, 회피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단위에 대하여: 허위출자한 자본액 또는 추출, 회피한 자본액의 2%이상 10%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한다.	
06	160조	주식,채권 사기발행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단위에 대하여: 불법조달한 자금액의 1%이상 5%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한다.	
07	161조	중요정보 규정위반공표, 불공표죄	무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허위재무 회계보고서 제공죄를 취소
08	162조	청산방해죄 허위파산죄	무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09	162조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서 은닉, 고의소각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10	164조	비국가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죄 외국공직자,국제공 공조직원원에 대한 뇌물제공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그 밖의 직접책임자를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한다.액수가 거대한 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번호	조문	죄명	단위에 대한 형벌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그 밖의 직접책임자에 대한 형벌	비고
11	179조	주식, 회사·기업 채권 독단발행죄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	액수가 거대하거나 결과가 엄중하거나 또는 그 밖의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불법조달자금액의 1%이상 5%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12	180조	내막거래, 내막정보 누설죄 미공개정보이용 거래죄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위법소득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위법소득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3	182조	증권, 선물시장 조종죄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증권, 선물 거래가격 조종죄를 취소
14	191조	자금세탁죄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	(단위에 대하여: 이상의 범죄를 통한 위법소득 및 그 생산수익을 몰수하고 자금세탁액의 5%이상 20%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자금세탁액의 5%이상 20%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5	194조	어음사기죄 금융증빙사기죄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그 밖의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그 밖의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10년이상 1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16	195조	신용장사기죄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그 밖의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그 밖의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10년이상 1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17	198조	보험사기죄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	(단위에 대하여: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그 밖의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그 밖의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그 밖의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그 밖의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10년이상 1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번호	조문	죄명	단위에 대한 형벌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그 밖의 직접책임자에 대한 형벌	비고
18	201조	탈세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탈세액수가 비교적 크고 응당 납세하여야 할 액수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한다. 액수가 거대하고 응당 납세하여야 할 액수의 30%이상에 달하는 경우,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원래의 탈세죄를 취소
19	204조	수출제한금 편취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편취한 세금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그 밖의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편취한 세금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그 밖의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편취한 세금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20	207조	부가가치세전용영 수증 불법판매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3년이하의 유기징역, 구역(拘役) 또는 관제(管制)에 처하며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수량이 거대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21	214조	가짜 등록상표상품 판매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판매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판매금액이 거대한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22	216조	특허 무단사용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23	219조	상업비밀 침해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상업비밀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24	223조	결탁입찰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25	224조	계약사기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액수가 거대하거나 그 밖의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그 밖의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26	225조	불법경영죄	단위에대하여 벌금을 부과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불법소득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불법소득액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번호	조문	죄명	단위에 대한 형벌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그 밖의 직접책임자에 대한 형벌	비고
27	226조	거래강요죄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28	281조	경찰용장비 불법생산, 매매죄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구역(拘役) 또는 관제(管制)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29	312조	범죄소득 및 범죄 소득이 산생한 수익 분식, 은폐죄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	3년이하의 유기징역, 구역(拘役) 또는 관제(管制)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장물 은닉, 이동, 매수, 판매 죄를 취소
30	347조	마약 밀수, 판매, 운수, 제조죄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	마약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15년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며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중국 형법중 기업범죄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1) 기업범죄와 관련된 죄명은 주로 <형법>제3장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 파괴죄”에 집중되어 있다. (2) 중국 법률은 기업범죄에 대하여 양벌제를 원칙으로 하고 단벌제를 예외로 한다. (3) 범죄를 실시한 회사에 대한 형벌은 벌금 한가지밖에 없고 자격형이 없으며 형벌종류가 비교적 단일함과 동시에 집행유예를 적용할수 없다. (4) 기업범죄에 대한 벌금의 액수는 상한의 제한이 있고 징벌성 벌금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수 없기에 그 처벌력은 심지어 <행정처벌법>에 규정한 휴업정돈, 영업허가중 잠시 압수, 취소 등 처벌조치보다도 약하다. (5) 기업범죄의 책임자에 대한 법정형은 자연인이 동죄를 범했을 경우에 비해 좀 낮다. 그 외 기업범죄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1인회사도 기업범죄의 주체가 될수 있으며 범죄를 실시하기 위해 기업을 설립하고 범죄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연인 범죄로 처리하고 기업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중국 기업범죄의 현황에 관한 데이터

나는 최근 몇년간에 발행된 《중국법률연감》을 찾아 보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公安부, 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전국

상공연합회, 기업가협회, 상공업협회, 북경·상해·강소·절강·광둥 등 지역의 상공업협회, 세계은행과 일부 경제연구소의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중국 기업범죄에 관한 가치있는 통계수치를 얻지 못했다. 그 가장 주요한 원인은 기업범죄가 중국에서 나타난 시기가 비교적 늦어 중요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부문에서는 이를 통계지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외 설사 공개된 소량의 기업범죄 관련 통계수치를 찾았다 해도 그 수치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범죄의 수량이 어마어마해서 이는 별로 참고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기업범죄에 관한 판결문을 수집하는 방법도 안통하는 것은 입수할 수 있는 샘플 수량이 너무 적어 대표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전형성도 담보할수 없으므로 기업범죄현황을 전면적으로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설문지조사, 탐방조사 등 방식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해도 적합한 조사대상과 탐방대상이 너무 적어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기업범죄에 관한 전면적이고 확실한 직접자료를 구하기 어려움으로 아래 <표 2>, <표 3> 등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상황을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표 2〉 2007-2011년 중국 일부 경죄범죄정보도표³⁾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관련죄명/유형별 죄명	건수	동기대비 증가	건수	동기대비 증가	건수	동기대비 증가	건수	동기대비 증가	건수	동기대비 증가
가짜, 불량상품 생산 판매죄	1271	17.90%	—	—	1511	-1.18%	1502	-0.60%	2355	56.79%
지적재산권 침해죄	910	20.21%	—	—	1019	1.49%	1294	26.99%	5707	42.96%
금융사기죄	1732	7.78%	—	—	3805	49.51%	6135	62.24%	—	—
금융관리질서 파괴죄	1701	4.87%	—	—	2477	27.03%	2927	12.49%	—	—
시장경제질서 교란죄	8811	25.53%	—	—	10996	12.34%	12069	9.76%	—	—
불법경영범죄	4117	50.42%	—	—	4117	50.42	—	—	—	—
회사, 기업에 대한 관리질서 방해죄	910	20.53%	—	—	769	-4.71%	1162	8.29%	—	—
밀수죄	586	-7.57%	—	—	622	2.13%	755	21.38%	—	—
세금징수관리 위해죄	3307	-0.39%	—	—	3610	3.86%	5434	25.60%	—	—

3) 데이터 출처: 「중국법률연감」(2008-2012). 도표중“-”는 데이터 일시부족을 표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관련죄명/유형별 죄명	건수	동기대비 증가	건수	동기대비 증가	건수	동기대비 증가	건수	동기대비 증가	건수	동기대비 증가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 파괴죄	19100	14.52%	21833	13.55%	24811	14.29%	30378	20.37%	—	—
연간 경제범죄사건 수리	47586	사건관련금 약61억	52378	—	55536	사건관련금 약152.1억	—	—	—	—

〈표 3〉 2011년-2012년 중국 일부 기업범죄정보도표⁴⁾

	2011년(1-5월)		2011년(1-10월)		2012년	
관련범죄	사건발생건수	동기대비 증가	사건발생건수	동기대 비증가	사건발생건수	동기대 비증가
등록자본허위보고죄, 허위출자, 출자추출, 회피죄	400	30%	1600여건	20%	17000여건	12배
비국가공무원수취죄, 비국가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죄	500	28%	1100여건	9%	6000여건	5배

<표 3>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승비율로부터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즉 기업범죄를 포함한 경제범죄는 통계수치에 반영되지 않은 수량이 어마어마하고 집중처벌의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제도, 체제를 수립하고 건전히 함과 동시에 법치화를 추진하고 법치주의제도를 건전히 하여야만 기업범죄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그 밖에 중국의 어떤 학자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⁴⁾를 이용하여 일부 죄명의 법정형과 선고형에 대해 분석을 하였는데 그 중 기업범죄의 형량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4) 이 도표는 중화인민공화국公安부에서 공개하지 않은 일부 데이터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4〉 중국 기업범죄 선고형 형량, 형벌양태표(일부 초록)⁵⁾

죄명	관제 (管制) 월수	구역 (拘役) 월수	구역 (拘役) 집행유 예 월수	유기 징역 월수	유기 징역 집행유 예 월수	무기 징역	사형집 행유예	사형	벌금조 (罰金組)	전부 몰수	부분 몰수	정치적 권리 중신 박탈	정치적 권리 박탈 월수	형량
가짜, 불량제품 생산죄	0	0	0	132	0	0	0	0	3	0	1	0	0	120
가짜, 불량제품 판매죄	0	0	0	18	24	0	0	0	2	0	0	0	0	2,94
등록자본 허위보고죄	0	0	0	15	0	0	0	0	3	0	0	0	0	14,1
공중저금 불법흡수죄	0	0	0	72	0	0	0	0	3	0	0	0	0	65,4
증권거래 가격 조종죄	0	0	0	34	0	0	0	0	4	0	0	0	0	31,2
자금조달 사기죄	0	0	0	210	0	0	0	0	3	0	0	0	60	190,2
어음사기죄	0	0	0	60	0	0	0	0	3	0	1	0	0	55,2
신용장사기죄	0	0	0	120	0	0	0	0	0	0	0	0	0	108
탈세죄	0	0	0	18	18	0	0	0	3	0	0	0	0	3,68
수출세환급 금 편취죄	0	0		84	0	0	0	0	0	0	1	0	0	76,64
저작권 침해죄	0	0	0	12	0	0	0	0	1	0	1	0	0	11,6
상업비밀 침해죄	0	0	0	34	30	0	0	0	3	0	0	0	0	6,09
불법경영죄	0	0	0	36	36	0	0	0	3	0	0	0	0	6,67

5) 白建军:<공정의 한계: 형사사법공정성에 관한 실증연구> 북경대학출판사 2008년 제18~23면으로부터 일부 초록. 표중 COMPUTE형량=사형×600+사형 집행유예×400+무기징역×300+[1- ANY(유기징역 집행유예 월수, 0)]×(유기징역 월수×0.1+유기징역 집행유예 월수×0.09)+[ANY(유기징역 집행유예 월수, 0)×유기징역 월수]+[1- ANY(구역(拘役) 집행유예 월수, 0)]×(구역(拘役)월수×0.04+구역(拘役) 집행유예 월수×0.08)+[ANY(구역(拘役) 집행유예 월수, 0)×구역(拘役)월수]×0.9+(관제(管制)월수×0.07)×0.9+(전부몰수×12+부분몰수×6+정치적 권리 중신박탈×10+정치적 권리박탈 월수×0.1+벌금조(罰金組)×2)0.1. EXECUTE. 白建军 책 제16면 인용.

기업범죄와 밀접히 관련된 하나의 문제는 기업가범죄이다.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기업가범죄는 아래와 같은 10대죄명과 관련된다고 한다. 즉 뇌물범죄, 자금불법조달유형의 범죄, 자산횡령유형의 범죄, 사기유형의 범죄(자금조달사기죄 제외), 유용(流用)유형의 범죄, 흑사회성질조직(黑社会性质组织, 중국의 범죄조직의 일종·역자)조직·지도·적극 참가죄, 부가가치세전용 영수증 허위발행죄, 출자유형의 범죄, 중대책임사고죄, 직권남용유형의 범죄이다⁶⁾. 기업가범죄를 유발할수 있는 10대 위험요소로는 재무관리, 기업용자, 무역, 입찰공고 및 입찰, 제품질량, 공사발주 및 청부, 직원의 임용, 증권거래, 물자구입과 안전생산이다⁷⁾. 이는 이번 회의의 주제가 아니므로 전개하지 않기로 한다.

독자들이 중국 기업범죄의 상황에 대하여 직관적인 이해를 할수 있도록 진실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1994년에 설립된 란이(联谊)회사는 우한(武汉)강철그룹의 가장 큰 판매상으로서 국내 업계에서의 순위는 제4위였고 연속 9년간 전국 사영기업 500위에 들었다. 2007년 란이(联谊)그룹은 전당업에 진입하였고 전당경영자격이 없는 란이(联谊)그룹은 후베이이쑤원허(湖北宜信永和) 투자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전당경영자격이 있는 후베이민썩(湖北民生)전당유한회사와 합작하여 후자를 경영의 주요 부분으로 전당업무를 전개하였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기간, 란이(联谊)그룹은 민썩(民生)전당유한회사의 실제 지배자인 쉘썩(雪正)회사와 합작협의를 맺고 약속한 이익분배비율에 근거하여 민썩(民生)전당유한회사의 인장과 표준약관을 이용하여 17개 기업에 대부금을 교부하였는데 누계 대부총액이 25270만위안에 달하였고 3.6%~6%의 월이율로 공동으로 취득한 이자총액이 1832만위안에 달하였다. 고훈썩(高宏震)이 지배하고 있었던 란이(联谊)그룹

6) 직권남용의 죄명은 이전에는 국가기관공무원에 많이 적용되었고 기업가와와는 관계가 없었던 것 같으나 형법의 완벽화와 범집행의 엄격화에 따라 국유회사, 기업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적 감정때문에 부정행위를 행하므로써 국유자산을 저가주식으로 환산하거나 저가로 매각하거나 배임행위를 행하여 상장회사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등 기업가를 상대로한 직권남용유형의 죄명을 규정한 조항들이 사법실무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업가가 경영과정에서 자기의 책임을 더욱 심중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원문: <2012년 중국 기업가범죄 매체사건 분석보고서>.

7) 범제일보사<법인>잡지:<2012년 중국 기업가범죄 매체사건분석보고서>, 법제사이트 http://www.legaldaily.com.cn/index_article/content/2013-01/22/content_4142448.htm에 게재, 2013년 1월13일 발표. “기업가범죄”란 기업가가 실시한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범죄를 가리키는데 기업가가 실시한 기업의 경영과 관계없는 범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은 지배하의 관련 회사를 통하여 전당회사의 “껍데기”를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진행하였고 은행의 신용대부자금을 유용하여 높은 이자로 재대출한 혐의를 받았는데 사건과 관련된 총금액이 인민폐 20억위안에 접근하였다. 2009년초, 란이(联谊)그룹은 지배하의 이썬용허(宜信永和)투자유한회사를 통하여 룡타이(融泰)전당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정식으로 전당경영자격을 취득하였다. 2008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란이(联谊)그룹은 잇따라 민썽(民生)전당회사와 룡타이(融泰)전당회사의 인장과 표준약관을 이용하여 55개 기업에 누계 총액이 17.3억위안에 달하는 대부금을 교부하였고 6401만위안의 이익을 얻었다. 그 중 5482만위안은 은행의 신용대부자금이었는데 이 부분의 이자수입은 131만위안이었다.

검찰원에서는, 란이(联谊)그룹이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쁘쨍(雪正)회사(다른 사건으로 별도로 처리되었다)와 결탁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불법적인 금융업무에 종사하여 위법적으로 불특정 대상에게 높은 이자로 대부금 19.29억위안을 교부함과 동시에 은행의 신용대부자금을 이용하여 높은 이자로 5482만위안을 대출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하였고 정상이 특별히 심각하였기에 불법경영죄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중국에서의 외국회사의 기업범죄상황 및 그 처벌현황에 관하여, 비정상적인 외국자본유치정책의 영향 하에 외국회사는 중국시장에 진입한 이래 “초국민대우”를 받아왔는데 시장진입, 정책집행, 세금·비용의 감면 등 특혜조건외에 일부 위법·범죄행위도 특별할 정도로 방임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법에 의하여 외국기업범죄를 제재하고 전면적으로 예방하는 형사사법이념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외국기업범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중 상당히 큰 부분은 외국사법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국내 사법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외국기업범죄에 관한 대부분 정보는 외국사법기관의 조사에 따르고 있으며 국내 사법기관이 주동적으로 외국기업범죄의 조사에 개입하는 경우는 아주 적다. 예를 들면 미국 루슨트(Lucent)회사 뇌물제공사건, 시멘스(SIEMENS)회사 뇌물제공사건, 아본(AVON)뇌물사건 등은 중국에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에 비하여 미국 DPC(Diagnostic Products Corporation)회사, UT STARCOM회사, CCI(Control Components Inc.)회사, SIEMENS회사는 중국에서의 상업 뇌물수

수 때문에 미국 사법부로부터 각각 479만 달러, 300만 달러, 1820만 달러, 13억 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상무부(商务部)의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국 외국자본 직접투자 상황조사에 따르면 2011년 중국에서의 한국의 투자액은 25.51억 달러로 제4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에서 기업범죄를 실시하는 외국기업은 주로 미국 기업으로서 다른 나라 기업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⁸⁾. 중국에서 한국 기업이 범죄를 구성하여 형벌을 받은 사건은 일정기간 수집하지 못했다.

II. 중국 기업범죄의 원인

중국 기업의 분류를 이해하는 것은 기업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는 전제이다. 중국에서 “기업”과 “회사” 이 두 용어는 때로는 서로 대체하여 사용되지만 “기업”이라는 개념은 “회사”보다 외연이 넓다. 즉 “기업”은 회사, 독자기업, 파트너십 기업을 포함하고 적지 않은 기업은 명의를 회사이지만 실은 사영 파트너십 기업 또는 사영 독자기업이다.

(1) 소유제에 따라 기업은 중국에서 전민소유제기업, 노동군중집체소유제기업, 혼합소유제기업, 연합경영기업, 사영기업, 외국투자기업, 홍콩·마카오·대만투자기업 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그 중 전민소유제경제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기업(회사)의 성질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가끔 범죄의 성립여부 및 상이한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다. 어떤 범죄는 특정된 기업에서만 발생할수 있다. 예를 들면 “국유자산을 암암리에 나누어 가지는 죄”는 국유기업에서만 발생할수 있고 사영기업에서는 일어날수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에는 적지 않은 “빨간 모자 기업”⁹⁾이 존재하고 적지 않은 기업은 명의를 집체소유제기업이지만 실은 사영기업이다. (2) 역사적 연혁, 영향력, 및 등급¹⁰⁾에 따라 구분하면

8) 于志刚: <중국 외국회사범죄의 법칙분석 및 그 대책> <중국법학> 2012년 제5기.

9) 빨간 모자 기업이란 정부 부서에 부속되어 있으며 국유기업 또는 집체기업의 명의로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좋은 명예와 신용을 갖고 있는 사영기업을 가리킨다.

10) 현재 중국의 행정구획은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즉 1, 중앙급 행정구(예를 들면 국무원)

중앙급 기업, 성부급(省部级) 기업, 지시급(地市级) 기업, 현시급(县市级) 기업, 향진(乡镇)기업, 가도(街道)설립기업, 촌(村)설립기업, 민간설립기업(개체사영기업)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급 기업은 규모가 크고 자금이 풍부하며 기술이 선진적임과 동시에 우대정책을 향수하고 있다. 향진(乡镇)기업은 20세기 80년대부터 급속히 성장하였고 경제의 발전, 세수입의 증가, 취업문제의 해결, 과학기술의 진보 등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3) 관리구조에 따라 유한책임회사(국유독자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를 포함), 주식회사, 외국회사 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4) 회사의 조직관계에 따라 본사와 지사,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분할수 있다. (5) 분야, 업계 및 경영범위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회사, 경매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석유화학회사, 강철회사, 석탄회사, 방직회사, 연초회사 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그 외 형법중 단위범죄에 관한 일부 죄명은 기업범죄의 유형이기도 하다. 그 밖에 범죄목적에 의하여 기업범죄는 기업경제범죄(자본범죄, 환경범죄, 재무사기범죄, 금융범죄 등을 포함한다)와 기업 초(超)경제범죄¹¹⁾으로 구분된다. 기업의 설립, 경영, 청산 등 과정으로부터 볼때 기업범죄는 설립단계의 기업범죄(예를들면 허위출자 또는 등록자본 허위보고죄), 운영단계의 기업범죄(예를들면 주식, 회사·기업채권 무단발행죄), 소멸단계의 기업범죄(예를들면 허위파산죄)로 구분할수 있다¹²⁾.

중국에서 기업범죄의 원인은 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가 있다. (1)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질이 있기에 이익을 도모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법률과 도덕을 무시하고 법정외무를 위반할수 있으며 심지어 형법을 위반할수도 있다. (2) 현대기업제도가 아직 전면적으로 확립되지 않았고 체제·제도가 완비되지 않았으므로 결책의 합리화와 기풍의 민주화를 추진하려면 임무가 무겁고 갈 길이 멀다. 신

2, 성(省)급 행정구(예를들면 성, 자치구, 직할시) 3, 지(地)급 행정구(예를 들면 자치주, 지급시(地级市)) 4, 현(县)급 행정구(예를들면 현, 자치현, 현급시(县级市)) 5, 향(乡)급 행정구(예를들면 향, 진(镇), 가도(街道)) 6, 촌(村)급 행정구(예를 들면 촌, 동네) .

11) 기업범죄는 범죄학적 견지에서 기업경제범죄와 기업 초(超)경제범죄로 구분할수 있다. 양자의 구별은 주관상 경제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객관상 경제관련성이다. 기업초(超)경제범죄의 기본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침해한 법익은 경제관계 또는 경제질서외의 사회관계이다. 2, 주관상 고의일수도 있고 과실일수도 있으며 반드시 경제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범죄가 발생한 영역은 경제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12) 蔣熙輝: <기업범죄형사책임문제에 관한 연구>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2011년 제143~162면 참조.

삼회(新三会)(주주회, 이사회, 감리위원회)와 구삼회(老三会)(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당위원회(党委会)¹³⁾, 직원대표대회¹⁴⁾, 노동조합)사이의 관계가 아직 바로잡히지 않았고 적지 않는 모순과 충돌이 존재한다. 현실속에서 회장과 사장이 권력을 쟁탈하는 현상이 매우 보편적인데 이는 회사의 경영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지어 기업범죄를 유발하고 있다. (3) 적지 않는 기업은 현대적인 관리이념과 창조 혁신정신이 결핍되고 낮은 인권의 잇점을 활용하는 “저인권우세”(低人权优势)¹⁵⁾에 과도로 의지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노동력집약형기업이고 기술 혁신을 중시하지 않으며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별로 중시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타인의 지적재산권도 충분히 존중하지 않기에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의 의식이 거의 없으며 핵심기술과 핵심경쟁력이 너무도 결핍되어 있고 외부에 과도로 의지하며 리스크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고 이윤이 매우 적어 심지어 기업을 유지해 나갈수 없을 정도에 달하여 위법범죄행위를 행하게 된다. (4) 중국 기업에 대한 세율이 비교적 높고 서로 다른 기업간의 차별취급은 불합리적이며 많은 기업의 세금부담은 무겁다. (5) 민간의 용자는 경로가 단일할 뿐만아니라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며 용자환경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기업의 고위 관리자들은 법제의식이 박약하고 많은 기업들은 법률사무를 중시하지 않으며 법률고문이 없거나 법률고문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소송, 상담(商谈), 계약의 검사와 확인만 책임지고 기업의 중대한 결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7) 기업의 사회책임의식과 환경보호의식이 박약하며 기본적으로 맹아상태에 처해있다고 말할수 있는데 선진국과 비하면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한다. (8) 효과적인 업계의 자율통제체제가 아직 확립되

- 13) 당위원회(党委会)는 “중국공산당위원회”의 약칭으로서 국유기업의 핵심적 지도기관이었다. 국유기업개혁이전, 당위원회는 전 기업의 지도, 행정, 경영, 심지어 직원의 생활보장마저 담당하고 있었는데 다방면적인 역할을 담당한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기관이었다. 개혁후, 당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당의 방침과 정책을 관철,수행하고 기업의 민주적인 관리를 감독,보장하는데로 옮겨 졌고 일정 정도의 인사임명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행정권은 이사회등 특정된 행정기관으로 넘겨 졌다.
- 14) 직원대표대회는 계획경제시대 기업이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는 기본형식이었고 직원이 민주관리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었다. 노동조합은 법률규정에 따라 직원대표대회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직원을 조직하여 기업의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에 참여한다.
- 15) 저인권우세란 노동력의 여러 방면의 인권보장이 합당한 수준에 달하지 못했기에 즉 인권보장방면에 투입된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에 상품 코스트 하강으로 인한 가격우세와 자본유치방면의 우세를 말한다.

지 않았고 무질서경쟁, 악성경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일부 기업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 (9) 사회적 신용이 결여되어 있고 소통과 거래의 비용이 높다. (10) 컴퓨터범죄는 기업범죄의 은폐화에 중요한 도움을 주었을 뿐만아니라 기업범죄를 조장하였고 그 사회적 위해성을 증대시켰다. (11) 관원의 권력운용이 규범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공권력의 상품화, 공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 부정적인 현상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12)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13) 입법은 일정 정도의 지연성이 있고 법률제도(회사법, 증권법, 보험법 등 상사(商事)관련법률, 기업범죄에 관한 형사처벌규정 등은 한층 더 완벽화할 필요가 있다)가 완비되지 않았으며 위법했을 경우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일부 법조문은 법률책임을 추궁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보다 "비용"이 높은 것이다. 즉 리스크가 낮고 수익이 높은 것이다. (14) 경제위기 및 세계경제형세의 저조함(低迷)은 기업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Ⅲ. 중국 기업범죄의 대책

어떤 학자들은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범죄에 대한 형벌종류가 단일하여 형벌목적 실현할수 없다.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와 형벌사이의 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범죄는 사실상 기업범죄이지만 형법은 직접책임자만 처벌하고 기업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예를들면 형법 제137조에 규정한 중대안전사고죄). 기업범죄에 집행유예를 적용할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방면에서 기업범죄관련규정들을 완벽화 할것을 주장한다. 첫째, 기업에 자격형(예를들면 기업영업자격 취소, 기업영업범위 제한)을 부과한다. 둘째, 기업의 범행을 공표한다. 셋째, 벌금형을 개혁한다(미국의 <조직체 양형지침>을 참조하여 범죄의 위해성을 정도에 따라 몇 개의 수량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상이한 벌금형을 규정한다). 넷째, 기업범죄의 집행유예제도를 규정한다. 다섯째,

배상조치를 규정한다.¹⁶⁾ 이상은 입법을 완벽화하는 견지에서 제출한 견해들인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일부 행위는 형사입법의 평가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을 완벽화 하고 죄명을 증가하여 사회위해성을 지닌 관련행위(예를들면 기업을 버리고 도망가는 행위, 통속적으로 “跑厂”이라고 한다)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¹⁷⁾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예측할수 있는 것은 금후 기업범죄 및 그에 대한 형벌의 추세로 아래와 같다. (1) 일부 죄명은 비범죄화, 경벌화할 것이다. (2) 일부 죄명을 신설할 것이다. (3) 일부 범죄의 구성요건은 변화할 것이다. 예를들면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라 일부 범죄는 결과범으로부터 위험범으로 변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기업범죄의 형사입법대책을 주장하고 있다. 즉 기업범죄의 성립범위를 확장한다(탄력성이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 기업범죄의 주체범위를 점차 통합하며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분을 약화한다. 구체적인 형벌제도를 건전히 하고, 점진적인 방식을 취한다) 형벌제도를 건전히 하고 기업범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기업범죄에 대한 회사법적인 대책으로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가 있다. ①기업감독제도의 설립을 추진하고 기업범죄의 억제역량을 강화한다(기업내부에서 범죄를 억제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기업내부의 구성원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며 감사회의 기능과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세분화하고 신규삼회(新旧三会)사이의 관계를 조정한다. 주주와 주주회, 이사와 이사회 및 고위층 에

16) 卢林 : [기업범죄론: 중미기업범죄비교연구의 시각으로부터], 법률출판사 2010년, 221~222면.

17) 2008년,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산둥반도 등 외국자본이 밀집한 지역에서 외국자본의 비정상적인 철수현상이 특히 엄중했다.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외국자본의 철수사건에서 자본을 비정상적으로 철수한 기업중 한국기업이 비교적 많았는데 특히 산둥반도의 한국기업들이 많았다. 산둥성 정부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몇년간에 비정상적으로 철수한 한국기업은 200여개를 넘는다고 한다. (자료출처: 何建华: <외국상사 자본철수, 국외도망현상 만연>, sina “재정과 경제”에 게재, <http://finance.sina.com.cn/chanjing/b/20090422/22516137101.shtml>, 2009년 4월22일 공표)
산둥성에서 2003년에 청산을 하지 않고 떠난 한국기업은 21개였고 2004년은 25개, 2005년은 30개, 2006년은 43개, 2007년은 87개였다. 정부 당국은 이를 “비정상적인 자본철수”라고 하고 매체는 “야밤도망”이라고 부른다. 예를들면 세강섬유는 2001년초에 중국에 들어온 섬유종합기업인데 경영범위는 채봉, 날염 및 섬유였고 연대(烟台)에 생산공장이 3개, 직원이 3000여명이 있었다. 2008년 1월에 도망간 세강섬유는 현지의 외주기업에게 인민폐 3000만원의 부채를 지었고 은행에게 1500만원의 빚을 지었다. (자료출처: <연대 한국기업 고위층 야밤도망, 공장부채4000여만>, <청도조간신문> 2008년 1월 18일.)

이전트의 법률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이사회와 에이전트가 권력을 남용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②법인격부인제도를 설립하여 기업이 유한책임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다. ③시장참여 진입기준을 낮추어 시장기회의 평등을 위하여 조건을 마련한다. 기업범죄에 대한 시장적 대책으로는 시장경쟁을 규범화하고 시장의 투명도를 높이며 기업신용평가체계를 세우고 기업의 사회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이 있다¹⁸⁾. 또 어떤 학자들은 책임일체화를 목표로 기업과 자연인의 형사책임의 구조를 동일화할 것, 형벌은 양벌제를 원칙으로 하고 단벌제를 예외로 하며 관련형벌제도를 완벽화할 것, 책임자의 형벌을 가중하고 재산형의 적용을 중시할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을 위하여 법의 권위와 공평·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반대하여야 하며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더욱 중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을 다스리는 것은 기업범죄를 통제하는 내부경로이고 성실·신용의 의식을 배양하는 것은 기업범죄를 저지하고 차단하는 외부경로이다¹⁹⁾. 이런 견해들은 기업범죄에 대한 중국 형법학계의 보편적인 관심과 호소를 반영하고 있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몇개 방면으로부터 착수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1)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현대기업제도를 수립하며 기업관리체제를 건전히 하고 신규삼회(新旧三会)사이의 관계를 잘 조정하며 기업이념의 갱신, 과학기술과 기업관리의 혁신을 추진하여 핵심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금융, 외화, 세수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쌍궤제(双轨制)²⁰⁾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은행의 독점적 지위를 타파하고 융자제한을 완화하며 민간의 융자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균형과 수출입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여야 하고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을 목표로 하지 말아야 한다. 세율을 낮추어 세금부담을 덜어 주고 불합리한 일방적인 우대정책을 폐지하여야 한다. (3) 연성(软性 soft)환경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치환경으로 외지·외국의 자본을 유치하여야지 토지를 저가로 주거나 공짜로

18) 丁英华: <기업범죄론>, 중국검찰출판사 2011년 제214~230면 참조.

19) 蒋熙辉: <기업범죄형사책임문제에 관한 연구>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2011년 제184~204면 참조.

20) 쌍궤제(双轨制)란 “두가지 궤도의 제도”의 뜻으로서 간단히 해석하면 국유경제와 비국유경제에 부동한 발전조건,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국유경제는 보다 쉽게 자금, 토지, 에너르기등 생산요소를 사용할수 있는 것, 통신업, 교통업등 분야는 국유경제가 독점하고 있고 비국유경제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증여하는 등 경제적 우대정책에만 의지하여서는 안된다. 외국자본 유치정책의 득실을 반성하고 녹색 GDP로 GDP에 대한 추구를 대체하여야 한다. (4) 서방 국가의 풍부한 경험과 선진적인 입법을 참조하여 입법의 질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률을 제때에 제정·개정·폐지하여 위법의 “비용”을 높이며 법에 따라 범죄행위를 행한 회사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기술적인 설계를 통하여 회계, 회계감사, 입찰 공고·입찰 등 제도를 건전히 하여 원천적으로 기업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이 좋다. 어떤 학자들은 미국의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등 입법경험을 참조하여 특별법의 형식으로 형벌체계외에 처벌법규를 설치함으로써 고액의 벌금으로 중국에서 날로 만연되는 외국회사의 범죄행위를 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²¹⁾ 찬성할만한 견해이다. (5) 공권력부문은 복무와 관리업무를 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공상행정관리부문, 거래소 등은 등록·기록을 잘 해야 하고 데이터를 제때에 갱신하여야 하며 공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감독에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기업가의 성실·신용의식, 직업정신 및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하여야 한다. 국유기업의 고위층 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으로써 직무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 (7) 업계협회의 발전을 촉진하여 업계의 자율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익만 추구하는 현상과 무질서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고 공평하고 건전한 경쟁 및 상호감독하는 업계풍조의 형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8) 효과적인 경험을 총괄하고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며 기업범죄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기업범죄를 조기에 그리고 그 규모가 작을 때 처벌하며 사회운동식으로 일시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들면 기업범죄를 적발한 자를 장려하고 무고한 자를 처벌하으로써 통계수치에 반영되지 않는 범죄수량의 감소와 기업의 정상적인 질서의 유지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1) 于志刚: <중국 외국회사범죄의 법칙분석 및 그 대책> <중국법학> 2012년 제5기

IV. 맺음말

경제의 번영과 기업의 전체적인 수량의 증가는 기업범죄의 절대수를 증가시키고 현대기업제도의 보편적인 수립과 관리, 감독체제의 완벽화는 기업범죄를 일정 정도 감소시킨다. 기업범죄의 전체적인 수량이 감소된다고 해도 기업의 규모, 경영분야, 범행, 영향력 등의 영향을 받아 기업범죄의 사회적 위해성이 당연히 감소되는 것이 아니기에 기업범죄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충분한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하고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